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의4서식] <개정 2022. 12. 30.>]산재보험]고용보험)년도 보수총액신고서(근로자·예술인용) ※ 신고는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를 이용하거나 전자적 매체(CD 등)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(10명 미만 사업장은 서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). 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"√" 표시를 하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대표자 관리번호 사업장명 산재업종 (요윸: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고용보험 산재보험 주민(외국인) ① 보험료 성 명 취득일 전보일 취득일 전보일 ③ 종사지 등록번호 부화구분 ② 연간 보수총액(원) ④ 연간 보수총액(원) (천입일) (전출일) (전입일) (전출일) 코드 ⑥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근로자 종사 시업 (단계술인) 보수총액 예술인 종사 시업 ⑤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⑥-1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(※뒤쪽 작성방법 제4호 참조) 보수총액 및 고용안정 • 직업능력개발만 적용 된 고용허가외국인 일용근로자 보수 총액(실업급여만 적용 제외) ⑦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신용근로자(일용 제외) 그 밖의 근로자 보수총액(산재보험만 해당) (※뒤쪽 작성방법 제5호 참조) ⑧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근로자 종사 사업(4+6+15) 9 합계 2+5+7+8+14 보험 보험 예술인 종사 사업(4)+6) ※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6조에 따라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15조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(이하 "자활근로종사자"라 합니다)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"노조전임자"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 등은 뒤쪽의 ⑬란에 적습니다 ⑩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 (f) 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 수(※ (5).(6) 또는 (7). (8)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 (※ 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 업종변경 전 업종변경 후 구분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업장의 일용근로자 및 보수총액(원) 그 밖의 근로자 수(명)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10제1항・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7제1항・제2항・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에 따라 사업장 근로자・예술인의 보수총액 등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신고인(사업주)

(서명 또는 인) / [] 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

년

⑬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"노조전임자"의 보수총액(※ 해당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)

관리번호			사업장	명		사업장 소재지				
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)	① 보험료 부과구분	산재보험			고용보험				
			취득일	전보일	⑭ 연간 보수총액(원)	취득일 (전입일)	전보일 (전출일)	③ 종사지 코드	⑩ 연간 보수총액(원)	
			(전입일)	(전출 <u>일</u>)					실업급여	고용안정 · 직업능력개발

※ 위 ⑯란의 "고용보험 연간 보수총액"은 "실업급여"와 "고용안정・직업능력개발" 중 어느 한 부문만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문을 구분하여 적습니다.

※ 노조전임자가 연도 중 일정 기간만을 노동조합에 전임한 경우에는 비전임기간의 보수총액도 ⑬란에 같이 적습니다.

작성방법

1 ①라의	"부헌류	부과구분"	부ㅎ의	내용

부과	부과범위						
구최	산재보험		고용보험		대상 종사자		
부호	산재 보험	임금채권 부담금	실업 급여	고용안정 • 직업능력개발	세 6 6시시		
51	0	0	х	x	09. 고용보험미가입 외국인근로자 10.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1. 항운노조원(임금채권부담금 부과대상)		
52	0	х	х	х	03. 현장실습생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 제123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현장실습생) 13. 항운노조원(임금채권부담금 소송승소)		
54	0	х	0	0	22. 자활근로종사자(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14조의2에 따른 급여의 특례에 해당하는 자, 차상위계층, 주거·의료·교육급여 수급자)		
55	х	х	0	0	05.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06.「선원법」 및 「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」적용자 07. 해외파건자(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)		
56	Х	х	0	х	01. 별정직·임기제(일반, 전문, 시간선택제, 한시)공무원 16. 노조전임자(노동조합 등 금품 지급) 25. 예술인 28. 고용허가외국인(당연적용대상 중 실급 임의가입자)		
58	0	Х	Х	0	21. 자활근로종사자(생계급여 수급자)		
60	0	0	Х	0	27. 고용허가외국인(당연적용대상)		

- 2. ②, ④, ⑭ 및 ⑮란의 "연간 보수총액"은 해당 연도에 발생된 보수총액을 적습니다.
- * 근로자의 연간 보수총액: 「소득세법」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뺀 금액(연말정산에 따른 갑근세 원천장수 대상 근로소득과 동일합니다)
- * 예술인의 연간 보수총액: 「소득세법」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과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기타 소득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법 제12조제2호·제5호에 따른 비과세소득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 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필요경비를 뺀 금액
- * 휴업·휴직 및 「근로기준법」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(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·사산 휴가를 말합니다) 중의 보수는 고용보험 보수총액에는 포함시키고, 산재보험 보수총액에서는 제외합니다.

- 3. ③란의 "종사지 코드"는 신고연도 마지막 날(보험관계가 소멸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멸일을 말합니다)에 근로자·예술인이 실제로 종사하고 있는 사업장의 우편번호를 적습 니다.
- * 다만, 기간이 정해진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근로자·예술인은 본사 주소지의 우편 번호를 적습니다.
- * 사업주별 사업장 리스트는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 또는 고용 보험(www.ei.go.kr)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.
- 4. ⑤ 및 ⑥란의 "일용근로자 보수총액"은 일용근로자(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) 또는 단기예술인들의 연간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고 ⑥-1 란은 ⑥의 일용근로자 보수총액 중 65세이후 새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및 고용안정·직업능력개발만 적용된 고용허기외국인 일용 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을 적습니다.
- 5. ⑦ 및 ⑧란은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제외자인 "월 60시 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" 및 같은 영 제3조의3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서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 중 산재보험 고용정보를 신고하지 않은 "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 보수총액 합계액"을 각각 적습니다.
- 6. ⑩란의 "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 사업장의 기간별 보수총액"은 ⑨번의 합계금액을 업종변 경 전과 후를 구분하여 적습니다(연도 중 산재보험 업종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).
- 7. ⑪란의 "매월 말일 현재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수"는 매월 말일 현재 근무하는 일용근로자 및 그 밖의 근로자의 수를 적습니다(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).
- 8. 사업장 정보가 틀린 경우 "보험관계 변경신고서", 근로자·예술인의 고용정보가 틀린 경우 "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변경 신고서", 신고가 누락된 근로자·예술인을 추가 신고하는 경우 "피보험자격취득 신고서"를 별도 제출합니다.
- 9. 근로자 또는 예술인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보된 경우 전보 이전 사업장에서는 "전보일(전출일)" 란에 전보된 일자를 적고, 전보 이후 사업장에서는 "취득일(전입일)" 란에 전입일을 적습니다.
- ※ 변경 및 정정에 필요한 각종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(www.comwel.or.kr)에서 다운로드 하고. 고용・산재보험 토탈서비스(total.comwel.or.kr)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.

과납 보험료 선납 충당 또는 반환 신청서

과납된 []산재보험료, []고용보험료가 있을 경우 내야 할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에 선납 충당 또는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반환금 입금 계좌 ()은행 계좌번호: 예금주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1조제2항·제56조의5제6항제3호·제56조의6제8항제3호 및 「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」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과납보험료를 []선납 충당 [] 반환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(사업주)

(서명 또는 인)/ []보험사무대행기관

(서명 또는 인)